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운영방안

강 진 석

부천시 의원·재정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I. 서 론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선진국들은 공공 부문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그것은 크게 압축해 볼 때 민영화(privatiz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두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대체로 보아 공공부문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정부개혁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추진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정부개혁은 행정개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재정부문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거나 미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각종 민영화 프로그램, 독립행정기관, 행정서비스의 성과측정 등은 대

표적인 행정개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 비해, 예산회계제도와 재정제도, 조세제도, 중앙·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 공공지출, 채무발행 등에 대한 재정개혁은 현재까지 확고한 틀을 갖고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추진될 때에만 정부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인식할 때, 지금은 재정개혁에 각별한 노력과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며 특히,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면에서 볼 때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그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①예산의 편성이 객관적인 비용과 수익의 추정에 기초하기보다는 예산

점증주의 방식에 의존하는 관행과 경향을 보이고, ②예산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체제가 결여되어 있고 예산집행의 결과를 다음 예산활동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③대부분의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초점을 두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부활동의 비용·편익 비교와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할 때 지금은 정부의 예산회계제도 전반에 걸치는 구조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예산회계제도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상태와 위상 그리고 운영실적을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차원에서는 특히,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정책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 경향과도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다.

## II. 지방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 지방회계제도의 현황

#### 1) 회계처리 기준 및 인식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크게 일반정부형과 지방공기업형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간에는 회계처

리의 기준과 방식, 거래인식기준(recognition criteria)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회계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를 회계처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인식기준을 취하며,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회계기준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가 일종의 회계기준 내지 실무지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일반 민간기업과 같이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다루는 주요 회계들간에는 회계처리방식은 물론 거래의 인식기준과 측정의 초점(measurement focus)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거래현상에 대하여도 회계별로 상이한 재무정보가 생산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영실적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주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민간기업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제약적인 적용을 하고 있음.

## 2) 회계의 특성과 운영방식

일반회계의 경우 회계의 특성과 내용 그리고 운영방식 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기타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사업유형·규모·특성·운영방식 면에서 자치단체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자치단체간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 3) 재무보고서의 유형 및 성격

재무보고서의 유형과 성격, 양식체제도 각 회계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자치단체 단위로 재무보고서가 제출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개별 공기업 단위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표 1> 참조). 즉,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방식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산출하며 민간기업 방식의 재무제표는 만들지 않고 있다. 이에 비

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민간기업과 유사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회계별로 본질적으로 상이한 재무보고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회계간의 상호연계방식에 의해 유용한 재무정보가 생산·공급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 2. 지방회계제도의 문제점

현행 지방예산회계제도는 예산제도 자체의 기반정비 문제 뿐 아니라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재무보고 주체의 공공책임성과 투명성을 충실히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현행 지방회계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기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유사사업이 존재하고 동

<표 1> 지방회계의 재무보고서 유형

| 일반회계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세출결산서</li> <li>· 기금결산보고서</li> <li>· 채권현재액보고서</li> <li>· 채무결산보고서</li> <li>·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li> <li>·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 및 사업보고서</li> <li>· 회계감사보고서</li> <li>· 재무제표</li> <li>· 경영실적평가보고서</li> <li>·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li> </ul> |

주: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일회계 내에서도 특성이 다른 사업이 포함되는 등 예산회계제도의 구조와 체계가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기타특별회계에 속한 간이상수도 사업과 지방공기업법 상의 상수도사업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에 따라 전자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방재정의 주요 회계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재정통합시스템이 결여되어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영실적에 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상의 문제보다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사업(또는 프로그램)간에 기능과 특성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지방재정 전반에 걸치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확한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의 수행이 어렵다.

셋째, 지방예산회계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회계의 기본개념들 -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개념(과목) - 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력(fiscal capacity)과 재정운영 상태 그리고 재정활동의 파급효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다.

넷째, 현행 지방예산회계제도(일반회계)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활동의 경제적 비용·

편익과 재정상태의 변화, 그리고 정책결정과 성과측정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자본,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어 있는데서 비롯된다.

다섯째,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정상태와 재정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 3. 외국사례 및 시사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현재 도입을 추진중에 있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스페인의 도입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복식부기제도를 도입·적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1998년에 발생주의 회계(자원회계: resource accounting)를 도입하였다.
- ②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최근까지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해왔으나 1999년에 발표된 GASB Statement No. 34를 통하여 Government-wide Financial Statement(통합재정보고)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Funds Financial Statement에 대하여는 수정발생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sup>2)</sup>

2) 복식부기제도의 시행은 2001 회계연도부터 자치단체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③ 뉴질랜드는 1990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 관한 한 세계의 첨단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일본은 1997년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서 공회계원칙(시안)을 발표하였으며, 199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약10%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공표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도입이 아닌 선도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구 및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⑤ 스페인의 경우 중앙정부는 1986년부터, 지방정부는 1990년부터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 1994년부터 정부예산제도에 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도입
  - 사회간접자본은 건설기간 중에만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처리함

이와 같은 외국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충분한 연구실적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민관합동의 전문가그룹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예산회계제도 및 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에 적합한 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Ⅲ.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방안

#### 1.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념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와 재정운영실적(수익과 비용)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의 평균원리에 의해 복식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방식이다.<sup>3)</sup>

여기서,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상호 비교해보면, <표 2>에서 현행의 예산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되며 수입·지출을 회계대상으로 하여 운영된다. 이에 비해 복식부기회계제도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방식에 의해 회계처리되고 예산거래 뿐 아니라 예산외거래도 포함하여 비용·수익·자산 및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회계제도이다.

3) 일반적으로 회계제도는 인식기준과 기장방식에 의해 구분된다. 기장방식에 따라서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되는데, 단식부기란 현금, 특정자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일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인식기준에 따라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되는데, 현금주의란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고, 발생주의는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의 변동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회계의 인식기준은 연속선 - 현금주의, 수정현금주의, 수정발생주의, 발생주의 - 상에서 파악될 수 있지만, 복식부기방식은 발생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lt;표 2&gt;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비교

| 분야    | 예산회계제도            | 복식부기회계제도                    |
|-------|-------------------|-----------------------------|
| 인식기준  | 현금주의 : 현금변동시점에 인식 | 발생주의 : 거래발생시점에 인식           |
| 회계범위  | 수입 및 지출           | 비용과 수익, 자산과 부채              |
| 회계대상  | 세입 · 세출예산거래       | 예산거래 및 예산외거래도 인식            |
| 재무보고서 | 세입 · 세출결산서        | 재정상태보고서<br>운영보고서<br>현금흐름표 등 |

## 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 1) 세입 · 세출예산의 편성

현행 예산과목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도모하는 접근방법을 지향한다. 현행 예산과목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세입의 경우는 목, 세출의 경우는 세목을 중심으로 하여 각 과목의 성질에 따라 복식부기에 따른 계정과목을 대응시킨다. 복식부기회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감가상각, 대손상각 등의 발생주의에 의한 항목은 별도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회계절차 및 장부관리

복식부기회계에서의 회계처리절차는 예산의 집행, 회계처리, 결산 및 재무보고로 구분된다. 예산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집행은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 시점(징수결의, 영수필통지서수령, 검수 및 검사, 지급 명령)에 각 예산과목별로 수익 · 비용계정,

자산 · 부채 · 순자산계정으로 대응하며,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가 산출되도록 하고, 산출된 재무제표에서 각 회계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여 통합재무제표를 산출한다. 장부관리의 경우 예산회계에 따른 지출부, 원인행위부 등 장부와는 별도로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장부인 총계정원장, 각과목별 원장 등 새로운 장부제도가 추가적으로 설정, 운영한다.

### 3) 채무의 관리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발행계획을 통해 연도별 채무부담, 연도별 지방채발행 및 상환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예산회계에서는 이를 부채의 증가가 아니라 수입으로 처리하여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 것처럼 파악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를 부채의 감소가 아니라 지출로 파악하여 재정이 불건전한 것처럼 파악하는 등 재정상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복식부기회계에서는 지방채의 발행, 상환을 부채의 증가

와 감소로 처리하며 예산회계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 현금의 유출입을 가져오지 않는 과목을 부채로 인식하여 자산, 비용과 관련된 부채를 적절히 대응하여 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4) 자산의 관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세입세출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즉, 자산의 취득은 지출로 자산의 매각은 수입으로 각각 처리되고 있으나 취득 후 처분이전까지의 자산관리는 세입세출의 범위에서 벗어나 별도로 관리(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되고 있다. 복식부기회계에서는 취득 및 처분시점은 물론 자산보유 중에도 회계적으로 인식, 관리되며 특히 가액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회계연도의 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해 주며 자산의 제조달 구입시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자산은 현금으로의 환금성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며 특히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사회간접시설, 유산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업의 자산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공공재 및 가치재의 특성을 가진 자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 5) 수익과 비용의 처리

수익은 현행 세입예산의 성질별 과목인 목을 기준으로 비용은 세목을 기준으로 하여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손익계정과목을

설정한다.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이전경비, 기타경비 및 상각비로 구분하고, 수익은 자주재원수익, 의존재원수익, 이전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구분하여 운영보고서에 계상하도록 한다. 특히, 현행 예산회계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과목중에서 수익으로는 유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평가이익, 대손충당금환입 등이 있고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이 포함된다.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지급의무를 수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하되, 감가상각비 등의 경우에는 상각을 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6) 회계성과물의 산출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분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되 사회간접시설은 별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운영보고서는 행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의 경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비용 중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비중이 큰 상각비는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조금과 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순자산변동보고서와 운영보고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sup>4)</sup>

4) 정부예산회계의 지출은 민간기업과 달리 수입과 개별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금흐름표는 현행 세입세출결산서와는 달리 현재의 현금잔액이 형성된 과정을 행 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현금흐름표의 일반적인 작성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업과 같은 자본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인 순자산(net asset) 개념을 사용하며 자산-부채=순자산의 형태로 제시된다.

### 3. 성공적인 도입전략

복식부기 회계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전제와 추진전략이 요구된다.

#### 1) 기본전제

첫째, 새로운 제도의 도입 비용 최소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혼란,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시스템의 효율성과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과를 최대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제공의 충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산회계정보와 함께 새로운 제도에 서의 재무제표 정보 제공, 의사결정 정보,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어야 한다.

넷째,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회계 및 외국사례의 벤치마킹을 하되 한국적 실정과 민간기업과 다른 정부회계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추진전략

첫째,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계획 도입과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충분한 사전홍보와 단계적 준비작업을 실시한다.

둘째, 지속적인 회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회계기준시안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용과 기법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복식부기회계 표준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범단체의 시범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을 통한 자치단체 유형별 표준 모델 구축 및 과도기적 이원체제(dual system)에 대한 대응 및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공무원 인식변화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순환보직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 지속적인 회계교육과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제도적 지원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예산회계관련 법령개정 등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대한 재

정인센티브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제도 전반을 통괄하는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식부기제도의 추진체로서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예산회계제도의 발전차원에서 국내 전문가에 의한 기초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여건(예: 학회, 연구회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IV. 종합 및 결론

상기 서술내용은 필자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회계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맡으면서 매년 집행부의 결산 감사시 현장참여와 복식부기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의회차원의 지원을 하면서 평소 느

낀점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본 내용중에는 의회와 행정부입장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실무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식부기가 조기에 활착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각시·군 의회에서도 워크샵과 세미나 개최등 복식부기도입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도입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운영에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재무정보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정보이용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